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3. 14.(화) 06:00 < 3.14.(화) 석간 >	배포 일시	2023. 3. 13.(월)
담당 부서	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보급과	책임자	과 장 이경수 (044-203-5380)
		담당자	사무관 최용균 (044-203-5383)

풍력·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실시

- 2023년 녹색혁신금융(주민참여자금 융자) 공고 및 접수 실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**2023년도 「녹색혁신금융사업**(풍력·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)」을 **3월 14일(화) 공고**하고, **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월 20일(월)부터 접수**한다고 밝혔다.

○ 동 사업은 **풍력·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**를 희망하지만, 자금 마련이 어려운 **주민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 지원**하는 사업이다.

□ 지원대상은 **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**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**주민 또는** 주민으로 구성된 **마을기업(5인 이상)**이며,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**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**한다.

※ 관련 규정인 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」의 개정이 있을 경우, 융자 지원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

○ 융자조건은 **20년간 저금리('23년 3월 현재 2.5%, 분기별 변동금리)**로, **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%까지 200억 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며, 전체 규모**는 지난해와 유사한 **368억 원(0.75% 증가)**이다.

< 주민참여자금 융자 주요내용 >

❶ **지원대상** : 태양광(500kW이상) 및 풍력 발전소(3MW이상)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(5인 이상),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

❷ **대출기간/이자율** : 20년 거치 일시상환 / 분기별 변동금리(23년 3월 현재 2.5%)

❸ **지원액** : 최대 200억 원(총사업비 4%와 발전사업자 자기자본의 20% 중 큰 금액의 90% 이내, 다년도 사업은 3년간 지원 가능)

□ 자세한 사업내용(공고문)은 **3월 14일(화)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**(www.motie.go.kr)에서 확인 가능하며,

○ 희망하는 주민은 **3월 20일(월)부터 자금 소진시까지**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(www.knrec.or.kr)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【별 첨】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 지원사업 공고(안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